

# 정책 동향

준비9호(10/16~10/22) 2017년 10월 23일

1. 정부·정당 정책 동향
2. 싱크탱크 연구 동향

## < 주요 동향 >

- ▷ 정부가 헌재소장 대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한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함.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의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경청 필요성.
- ▷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제개혁연대의 정부의 경제정책 중 “정부 일자리정책이 신규채용 증가 등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53.5%로 “그렇다”(40.4%)보다 높게 나온 조사보고서의 시사점을 요약함.
- ▷ 19대 대선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대한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선거제도와 개헌을 개혁패키지로 묶어 추진하자는 최태욱 교수의 아이디어. 또한 4차산업혁명의 촉진자와 수용자 관련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와 참여연대의 퇴직공직자 취업 실태의 문제점과 대안에 주목함.

※ 정책네트워크내일의 공식입장이 아닌 회원님을 위한 정보제공용이므로 인용·보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1. 정부-정당 정책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3
청와대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보고서 발표문	4

### 2. 싱크탱크 연구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경제개혁연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10)」발표	5
현대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촉진자와 수용자	6
국회입법조사처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6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7
국회입법조사처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투표행태와 시사점	8
세교연구소		‘선거제도 개헌’이면 어떨까?	9

## 1. 정부-정당 정책 동향

### ■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10.18.)

#### <요약>

1) 10/18 일자리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10대 중점과제와 10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함**. 10대 과제는 1-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2-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3-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4-혁신형 창업 촉진 5-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6-사회적경제 활성화 7-지역일자리 창출 8-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9-근로여건 개선 10-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임.

2)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 공공일자리 창출은 -경찰·부서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4만명 등 현장 민생 공무원 17.4만명 총원,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금년부터 총원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총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

<원문 읽기> <https://goo.gl/z7gkEE>

#### 시사점

1) 일자리 로드맵을 검토한 결과, 인프라 구축, 맞춤형 지원 등은 기존의 정책들의 사실상 재탕이고, 로드맵의 핵심은 세금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머물고 있음.

2)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과 고부가치 신산업 육성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로드맵은 담아내지 못함.

### ■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2017.10.18.)

#### <요약>

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2) 11/14 **문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

3) 10/16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 전원이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재판관 회의를 열어...‘조속히 (헌재소장과 재판관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 ‘**권한대행 체제를 헌재가 원한 적도 없고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소장 임명의 선결과제도 아닌 만큼, (청와대와 국회는) 하루빨리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경향신문 등 다수 매체가 보도함.

**【시사점】**

- 1) 현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한다는 청와대에 대해, 현재가 재판관 회의를 열어 현재소장 임명을 촉구했지만, 청와대는 현재재판관 후보만 지명하는 미봉책 대응함.
- 2) 청와대는 현재소장 지명 대신 현재 재판관 후보만을 지명하여, 결과적으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꼼수를 선택하여, 국회와 민의를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보고서 발표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10.20.)**

**<요약>**

- 1) 위원회는 이상의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안을 제시...첫째, 최종 조사결과, **건설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p 더 높았습니다...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 2) 둘째,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서 가장 높았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이 35.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낮은 편입니다...원자력발전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 3) 셋째,...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전체의 33.0%입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차례로 27.6%와 25.3%입니다.
- 4) 10/22 문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 고 밝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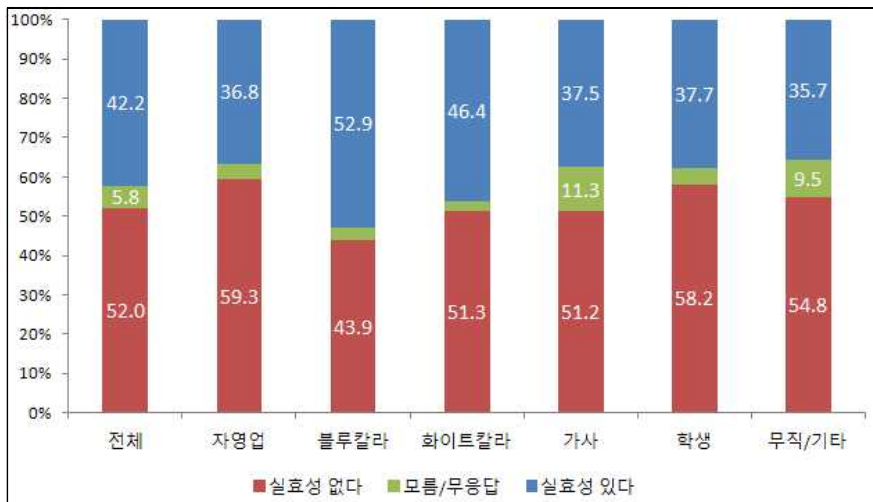
- 1)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일방적 중단과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공사 재개 결정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사 중지 결정 대신 국무위원회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 결정함.
- 2) 또한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법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공론 수립 등 다양한 과정의 생략으로 인한 물리적 비용 낭비, 사회적 혼선 초래 등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임.

**2. 싱크탱크 연구동향**

<요약>

-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7.10)」 결과를 발표...(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0월 11일(수)~13일(금) 3일간 실시...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 2) “정부 일자리정책이 신규채용 증가 등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53.5%로 “그렇다”(40.4%)보다 높게 나왔다. 이어 “정부 일자리정책이 고용안정, 차별해소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52.0%)이 “그렇다”(42.2%)보다 높았다.
- 3) 일자리의 양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에서 청년세대인 20대와 30대 연령층 중 남성들은 “실효성 없다”는 응답률이 각각 56.9%, 59.7%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여성들은 반대로 “실효성 있다”가 58.7%, 59.4%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반면, 정년을 앞두고 있는 50대와 은퇴세대인 60대 이상의 경우는 남녀 모두 부정적인 평가 또는 의견유보 비중이 높았다.
- 4)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평가도 이와 대체로 유사하지만...20·30대 남성들은 역시 부정적 평가가 많았고 20대 여성도 긍정적 평가가 많았으나,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일자리의 양 평가와 달리 부정적 평가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30대 여성의 경우 정부 일자리정책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실효성이 있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는 그만큼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학생들 역시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

<직업별 일자리 정책 실효성(일자리 질) 평가 (%)>



<원문 읽기> <https://goo.gl/NgTMMm>

【시사점】

- 1)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양을 늘리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으며, 특히 20~30대 남성과 30대 여성, 학생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점에 주목해야 함.
- 2)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호전되지 않거나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젊은세대가 잠재적 정부 비판세력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촉진자와 수용자** (현대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연구센터, 2017.10.16.)

**<요약>**

- 1) **4차 산업혁명의 촉진자는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요소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센서, 자동화 기술, 신소재, 바이오 신기술 등으로 구성된다....따라서 수용자에 해당하는 개별 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따라 일자리의 감소가 불가피하다...촉진자에 해당하는 요소기술에서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나아가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 2) **4차 산업혁명의 수용자는 요소기술이 적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 또는 기업으로,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농림어업 등을 포함한 사실상 산업 전 분야를 의미한다...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변화의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유통, 금융 등이 국내경제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3) **촉진자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를 유도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용자 측면에서...개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별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고...조선, 철강, 자동차 등 성장 한계에 봉착한 우리의 주력산업...대책 마련 필요. 또한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물류·교통, 유통, 금융, 의료·보건 등의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청사진 제시 필요**

**<원문 읽기>** <https://goo.gl/fGcv2P>

**【시사점】**

-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촉진자와 수용자가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필자들의 제안에 주목 필요성

■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2017.10.19.)

**<요약>**

- 1) **헌법재판소의...심리 정족수가 법률상 7명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피, 제척 등이 발생할 경우에 심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재판관 정원을 9인으로 한 것과 그 공백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해석에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헌법적 가치형성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
- 2) 독일의 경우에도...「연방헌법재판소법」 제7a조에서 “**비상추천제도**”를 신설하였다...스페인인 재판관의 임기만료 4개월 전에 **신임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두고 있다. 또한, **후임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프랑스 헌법 제56조에서는...사직의 효력은 보결위원이 임명된 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해외 입법례를 참고한 개선방안...첫 번째로,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를 퇴임 예정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4개월전에 개시하도록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현행 헌법하에서도 법률을 개정하면 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두 번째로, 후임재판관의 임명시까지 선임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은 헌법 개정 시에 임기와 선임재판관의 임기연장에 대한 예외를 헌법에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세 번째로 예비재판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대부분의 예비재판관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예비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부여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독일과 같이 일정 기간 내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비상추천제도도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x3gq4F>

**시사점**

- 1)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일은 국회나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에도 해당하는 사항... 헌법재판소 업무공백과 그로 인한 국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필자의 주장 경청 필요성.
- 2) 추후 개헌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공백을 방지할 방안으로 예비재판관 제도와 비상추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성 있음.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2017.10.18.)**

**<요약>**

- 1) 2011년 6월~2017년 6월까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유관 협회,대부업체, 전자금융 관련 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심사대상자의 약90%가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음.
- 2) 즉, 2011년 6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79명 중 74명(94%)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특히 이들 3개 기관의 취업 제한 심사대상자 중 금융기관에 취업을 희망한 경우는 35명이었는데, 이 중 30명(86%)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금융기관 취업 뿐 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대부업체, 관련 협회 등 금융관련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심사대상자 48명 중 43명(90%)이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함.
- 3) 퇴직 전 부서·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기관에 ‘취업가능’하다고 결정된 취업제한심사대상자 43명의 취업내용을 재확인해 본 결과, 16명(37%)의 대상자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해당부처가 92%의 지분을 보유한 국가소유 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상근감사로 간 경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한 경우,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근무하다가 저축은행에 취업한 경우 등 퇴직 전 부서·기관과 업무관련성

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가능’결정을 내린 사례도 다수 발견됨.  
4) 따라서 퇴직 후 취업제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사 주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으로써 반부패·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구성이 필요하며, 부서가 아닌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연관성을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원문 읽기> <https://goo.gl/jSdaJb>

### ■ 시사점

1) 퇴직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반부패·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신설이나 취업 제한과 이와 함께, 전관예우, 관피아 관행 등 반칙과 특권을 막을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투표행태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7.10.20.)

#### <요약>

1)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별로 특정 정당에 편중된 지지행태가 나타나긴 하나,...지난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89.0%,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각각 80.5%를 득표했다....이번에는...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각기 전통적인 텃밭인 광주·전라와 대구·경북에서 최다득표했지만 과거만큼 압도적인 우세는 아니었다.

2) 광주·전라 지역(KJ: 백색 막대)의 경우, 과거에는 민주당 계열 후보가 전국 득표율에 비해 50%p. 이상의 추가 득표를 했지만, 이번에는 21%p. 가량 높았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보수정당의 후보들은 40%p. 정도 낮은 득표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22%p. 정도였다. 대구·경북 지역(TK: 회색)의 투표행태도 비슷한 패턴이다 부산·경남(PK: 연두색)은 선거를 거듭할수록 지역투표 성향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전환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3) 2002년 대선 들어 연령대에 따른 지지율 격차가 뚜렷해졌지만, 압도적으로 패한 2007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낮게 득표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10년 전에 비해서도 한결 세대격차가 크게 나타났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젊은 층의 경우, 안철수, 심상정 후보로 지지가 분산되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어 보이지만,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4)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후보 지지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에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로 평가한 유권자의 이념 투표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비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성향 유권자의 경우에도 과반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읽기> <https://goo.gl/T1iim2>



## ■ 시사점

1) “19대 대선의 특징은 ‘지역투표의 약화’, ‘연령 효과와 세대효과의 혼재’, ‘이념과 이념투표의 변동’ 등으로 요약”된다는 필자의 분석 참조.

## ■ ‘선거제도 개헌’이면 어떨까? (최태욱, 세교연구소, 2017.10.16.)

### <요약>

1) 현재 국회에는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두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하나는 개헌특위이고, 다른 하나는 정개특위이다...개헌특위가 만약 2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면 그 안은 5월 24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3일에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런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총 300석 중 현재 107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개헌안은 작성할 필요조차 없다는 의미이다.

2) 개헌특위에서 권력구조 개편안이 합의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기하고 야당 모두와 함께 분권형 대통령제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전제로 내세웠다.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해줘야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안 합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3) 자유한국당은 비례성이 높아지는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자당의 의석 축소와 좌파 및 중도 정당의 부상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면, 다당제 정착을 원하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자강파는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보다 중시하는 입장이다...청와대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제안을 받고, 대신 그 당으로부터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받아내는 건 어떨까?...중도보수, 그리고 잘만하면 중도정당까지도 연립에 끌어들여 집권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등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받고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성사시킬 가능성은 상당하다.

4) 개헌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선거제도 관련 조항 개정에 동의해주고, 그래서 민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에 찬성한다면, 내년 2월에 나올 국회 헌법개정안은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담고 있는 이른바 ‘패키지 개혁안’이 된다... ‘권력구조 개헌’ ‘기본권 개헌’ ‘지방분권 개헌’ 못지않게 ‘선거제도 개헌’이 중요한 이유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4NTEZa>

## ■ 시사점

1) 필자의 아이디어지만 분권형대통령제와 다당제를 위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주고받는 패키지개혁안을 거대 양당에게 촉구하는 것 검토 가능하다고 봄.

2) 그러나 최근 자한당의 대표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개헌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한 상황이므로 쉽지 않겠지만, 그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비판할 필요성 있음. <끝>